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701,281,019 | 21,038,431 |
| 일반회계 | 612,840,417 | 18,385,213 |
| 특별회계 | 88,440,602 | 2,653,218 |
| 공기업특별회계 | 71,946,178 | 2,158,385 |
| 공영개발특별회계 | 17,950,764 | 538,523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6,869,441 | 806,083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7,125,973 | 813,779 |
| 기타특별회계 | 16,494,424 | 494,833 |
| 의료급여특별회계 | 363,893 | 10,917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| 18,921 | 568 |
|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512,258 | 15,368 |
|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| 4,897,090 | 146,913 |
|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| 3,573,671 | 107,210 |
| 주차장운영특별회계 | 1,603,825 | 48,115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576,554 | 17,297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4,111,069 | 123,332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837,143 | 25,114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551,68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자원구분)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 국고보조금(국)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균), 기금(기), 도비보조금(도), 특별교부세사업(특), 시군조정교부금등(조)